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8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6. 3.~6. 23.)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도로명주소의 홍보)”를“(주소정보의 홍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를 “연장자순으로”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을 “간사 1인을”으로 하며, “도로명주소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간사는”을 “시장은”으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중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u></p>
<p><u>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u></p>	<p><u>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위치의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u></p>
<p><u>제3조(도로명의 사용의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u></p>	<p><u>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u></p>

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을 손수건, 안내지도 등의 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문 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선착장,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등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

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생략)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 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명 주소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1/2 이상이 되도록 하되,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에 한하여 연임-----.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삭 제>

2. (생략)

3. 시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

1.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삭제>

2. ----- 주소정보-----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
장자순으로 -----
-----.

제10조(간사) ① ----- 간사

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로 명주소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심의결과 보고 등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인-----, ----- 주소 정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 포 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장이 -----

제12조(수당 등) -----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 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세출예산 없음

<'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 291,293천원>

- 도로명주소 교육, 홍보 실시
- 국가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위원회 명칭 변경, 조문체계 재정비로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최지이(2133-5847)